

2002년 미국의 주요노동동향 및 2003년 전망

김 세 곤
(노동부 주미 노무관)

이 윤 수
(로체스터 대학 경제학부 박사과정)

2002년 미국 경제를 개관한다면 2001년의 경기침체에 대한 조기회복의 기대가 무산되고 경기침체가 지속된 한 해였다. 민간소비가 약화되고, 기업의 설비투자도 부진했으며, 엔론과 월드콤을 비롯한 대기업의 회계부정사건으로 기업의 신뢰가 무너졌으며, 주가도 크게 하락했다. 노사관계에 있어서도 실업율이 6%로 상승하는 등 1995년 이후 최악의 상황이었으며, 대형 분규도 발생하여 노사 모두에게 어려운 한 해였다.

본문에서는 2002년 미국 노동시장을 거시적인 지표를 중심으로 정리한 후, 장기실업의 증가에 따른 실업보험연장, 서부해안 항만노조의 파업, 초과근무와 관련한 노사관계의 이슈 및, 기업연금 위기, 불법체류 근로자의 노동권에 관한 연방대법원판결 내용과 중간 선거결과 공화당이 상·하원 장악 등 노동계에 영향을 준 사건들을 소개하고, 2003년의 미국 노동시장에 대한 전망을 제시한다.

■ 2002년 주요 이슈

고용 악화 - 실업자 증가

미국 경제의 침체로 2002년 1월에 5.3%였던 실업율은 4월에 6%로 피크에 이른 후 9월에는 5.6%로 조금씩 감소하다가 다시 11월에 6%로 상승하였다.

경제활동인구는 1월의 141,390천명에서 11월에는 142,733천명으로 1,343천명 증가하였는데 이중 취업자는 1월의 133,468천명에서 11월은 134,225천명으로 757천명 늘었고, 실업자 또한 11월은 8,508천명으로 1월의 7,922천명보다 586천명 증가하였다.

취업자 감소는 제조업, 건설업에서 현저 현저하며 제조업은 11개월간에 397천명, 건설업은 252천명 감소하였다. 반면에 서비스업은 496천명 증가하였고, 정부부문도 296천명 증가하였다.

특히 27주 이상 장기실업자는 2002.1월에는 전체실업자의 13.9%, 2월은 14.9%, 3월 16.7%를 차지하여 의회는 실업급여수급기간을 당초 26주에서 13주 더 연장하여 39주로 하는 실업급여 연장 임시조치법을 통과시켜 200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였다. 그런데 27주이상 장기실업자의 비율이 10월은 전체실업자의 20.3%, 11월은 20.6%를 차지하는 등 장기실업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고 2002년 말에 실업급여가 끊어진 실업자가 80만명에 달해 이들의 생계보호 문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다.

한편 특기할만한 것은 실업률 증가에도 불구하고 의료보건 인력은 11개월간 연속 고용이 증가하고 있는 점이다. 의료보건 인력은 1월의 10,551천명에서 11월은 10,780천명으로 11개월간에 229천명 증가하였는데 이는 고령화에 따른 양로시설의 증가와 간호인력이 3D업종으로서 미국내에서도 취업기피직종

이 되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우리나라의 우수한 간호인력의 해외 취업에 좋은 여건이 되고 있다.

장기 실업의 증가에 따른 연방정부의 실업수당 수혜기간 연장에 관한 이슈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고 실업률이 증가함에 따라 주정부의 실업보험 수혜기간을 연방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추가 연장시키는 법안 (Temporary Emergency Unemployment Compensation TEUC)이 2002년 3월에 통과, 발효되었다. 12월 28일 까지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TEUC 프로그램을 통한 연방정부의 보조로, 보통 26주간 지급되는 주정부의 실업수당이 만료된 장기 실업자들이 추가 13주까지 실업수당을 연장지급받게 되었다.

예정되었던 대로 TEUC프로그램이 만료되어감에도 불구하고, 6개월이상 직장을 잡지 못하는 장기실업률은 12월 21.8%에 이르러 1992년 이후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새로운 고용 창출은 매우 더뎠다 (현재 실업자수는 8,100천인데 비해 새로 창출된 일자리는 3500천에 불과하였다), 장기적 실업에 놓인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연방국회가 TEUC프로그램을 연장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여론 및 연구기관의 보고서를 통해 제시되었다. 하지만 연방국회가에 대해 아무런 조치 없이 회기를 넘

김에 따라 TEUC프로그램이 12월 28일 만료되었고, 한시적으로나마 실업수당 수혜기간이 연장되었던 약 78만명의 실업자들이 이날부로 더 이상의 실업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TEUC의 중단으로, 26주간 지급되는 주정부의 정규 실업수당의 만료와 함께 정부로부터의 금전적 보조가 모두 정지되는 실업자의 수는 앞으로 매주 95,000명씩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TEUC혜택을 포함하는 39주간의 실업수당이 이미 만료된 실업자 백만명을 포함해 정부의 금전적 보조없이 직장을 찾아야되는 실업자의 수는 12월말 현재 2백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¹⁾

실업보험만을 위해 240억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는 연방정부가, 고용기회가 충분히 증가하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백만명에 이르는 실업자의 실업수당이 만기되도록 방치한데에 대한 비난이 제기되자, 부시 대통령은 TEUC의 연장을 연초 국회에서 제1안건으로 처리해 줄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모든 주에서 수혜기간을 연장시키려는 안을 제시한데 반해 공화당 하원에서는 실업률이 높은 15개 주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에서 연방정부의 실업수당지원을 중지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2003년 1월 7일과 8일 각각 열린 상원과 하원 의회에서는 지난 해 12월말

에 만기되었던 연방정부의 임시 실업수당혜택(TEUC)프로그램을 5개월 추가로 연장하는 안이 통과되었다. 이를 지난 8일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지난해 12월말13주의 추가 수혜혜택기간이 만료되기전에 실업수당지급이 정지되었던 78만명의 실업자와 26주간 지급되는 주정부 실업수당이 만료되는 실업자들(매주 9만5천명)은 앞으로 기존에 지급되던 주정부의 실업수당이 만료된 후에도 추가적으로 13주간 실업수당을 받게 된다. 한편 민주당은 이미모든 실업수당혜택(26주의 정규 실업수당과 13주의 연방정부실업수당)이 만료된 백만명의 실업자에 대해서도 실업수당을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하원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번 연방의회의 실업수당 보조 프로그램은 39주의 실업수당 수혜기간이 지나도록 직장을 찾지 못한 약 백만명에 이르는 실업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1990년 불황 당시 연방의회는 실업수당 수혜기간을 26주까지 추가 연장해 실업자들은 총 52주까지 실업수당을 지급받았다.

여기에 연방정부의 추가적인 실업수당 지원에 반대하는 연구를 하나 소개하면, EPF는 주정부의 재정적자, 상대적으로 짧은 미디안 실업기간 (8.4주), 비적극적으로 직장을 찾는 실업자수의 증가, 맞벌이 부부의 증가등이 추가적인 실업수당 수혜기간 연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EPF의 보고서는 고용시장

1) National Employment Law Project, 12월 27일 언론보도 자료

에서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실업자들을 상대로한 교육과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새로운 직장에 필요한 기술을 습득시키는 교육과 효과적으로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²⁾ 하지만 전반적인 고용여건이 악화되어있는 상태에서 정부의 직업훈련이 실업자의 (재)고용에 얼마나 직접적인 도움을 줄 것인지는 의문이다.³⁾

서부항만 노사분쟁

미국의 노사관계의 특징은 노사분규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는 점과 정부는 개입을 최소화하고 노사가 자율적으로 교섭을 한다는 점이다. 미국의 경우 1천인 이상 대형사업장의 노사분규는 2001년에 29건으로서 1970년대의 300건의 10%정도밖에 안 된다. 또한 연방노사관계법에 의해 노사분규가 국민의 일상생활과 국가경제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만 대통령이 긴급조정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이것도 1978년 이후 행사된 적이 없다.

그런데 2002. 10월에 발생한 서부항만 노사분쟁은 미국 경제에 현저한 영

향을 주는 대형 분규로서 부시대통령이 긴급조정 명령권을 행사하는등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분규였다.

서부항만협회와 항만노조(노조원 10,500명)는 지난 3년간(1999.7.1-2002.6.30) 체결된 단체협약을 갱신하기 위하여 서로 교섭을 계속하여 왔으나, 단체협약기간이 종료된 7월 이후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협약 기간을 1일단위로 연장해오다가 핵심 쟁점인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 감축 문제에 대하여 갈등이 심화되자, 9.26이후부터 노조측이 태업을 강행하였고, 이에 맞서 사용자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하여 항만 운송 작업이 전면 중단케 되었다. 서부지역 29개 항만 작업의 중단으로 1일 20억불의 경제적 손실을 입는 등 미국 경제가 심한 타격을 입자, 10.7 부시대통령은 긴급조정명령권을 행사하였고, 10.8 법무부 장관은 80일간의 냉각기간 신청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하였으며, 10.8 동 법원은 10.16까지 작업재개 명령을 내린 후 10.16 노사당사자의 의견 청취 후 정식으로 80일간의 냉각기간을 설정하였다.

법원의 작업 재개명령으로 항만 작업은 일단 재개되었으나, 노조측은 정부 개입에 대하여 강력 반발하면서 안전을 우선시 한다는 이유로 준법 작업을 하여 사용자측에서 다시 노조를 고발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다가 연방알선조정청의 적극적인 중재노력에 의해 11.1 노사는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 조정 문

2) Employment Policy Foundation, 10월 26일 언론보도자료

3) 정부주관 직업훈련의 비효율성에 관해서는 The Heritage Foundation Backgrounder, No. 1597, The Heritage Foundation, Sep. 30, 2002를 참조할 것.

제에 상호합의 하였고, 11.24에는 임금 및 기업연금인상에도 합의하여 작업이 정상화되었다. 이후 노조측은 12.9-13 대의원 대회를 개최하여 6년간의 단체협약에 압도적으로 승인하고 2003년 1월 예정인 조합원 투표에서도 가결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사분쟁의 불씨가 되었던 신기술 도입에 따른 인력 조정문제는 노조는 사용자측이 요구한대로 사무자동화, 항만 작업 전산화는 도입하되 이로 인해 감원이 예상되는 사무직 400명은 타부서 근무등으로 직장을 보장한다는 선에서 타결이 되었고, 노조측은 대신 6년간에 임금 11% 인상(시간급 27,5달러를 6년간 3달러 인상), 기업 연금 60% 인상등 조합원의 복지후생을 대폭 높였다.

엔론 사태이후 기업연금 위기

2001.12.2 엔론사 파산은 기업 회계의 투명성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생활 보장수단인 기업연금의 신뢰성에 크게 타격을 준 사건이었다. 엔론사 파산으로 근로자는 실직했을 뿐만 아니라 기업연금 원금이 상실되어 노후생계 보장에 타격을 입게 되었다.

<그간의 경위>

엔론사는 1985년에 설립된 에너지 중개회사로서 근로자는 24,000여명이며, 기업연금으로서 확정형 연금제도, 401(K) 제도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

한 것이 401(K) 제도인데 11,000명의 근로자가 가입한 이 제도는 근로자가 2001년 기준 연간 10,500달러 한도내에서 기본급의 6%까지 기여금을 내고(기여금은 소득공제가 됨), 회사는 자사주를 기본급의 3%까지 출연하여 개별 구좌의 운영실적에 따라 연금액이 결정되는 형태였다.

401(K) 기업연금 가입 근로자는 엔론사 자사주 주식을 60%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엔론사 주가가 상승할 시는 막대한 이익을 보는 반면 파산시는 원금에 손해를 볼 수 있는 주가의 변동에 민감한 제도이다.(2000.8월 엔론사 주가는 90달러로서 1998.1-2001.1월기간중 투자자는 5배의 수익을 올렸음)

2001년 9월말경 엔론사 사장은 근로자들에게 회사가 안정적이며 주가는 아직도 저평가상태임을 알린 후 9.27에는 401(K)구좌 회계정리를 위해 거래정지기간 설정을 예고하였고, 10.26-11.23까지 구좌 거래 정지를 하였다. 이 기간중 엔론사 주식은 10.24의 15.4달러에서 11.13은 9.3달러로 폭락하였고, 거래정지 기간중 근로자들은 엔론사 주식거래가 중지되었으나, 경영진들은 주식을 매도하였다. 12.2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하자 엔론사 주가는 34센트로 급락했고, 401(K)기업 연금 가입자는 원금의 98.8%를 손해를 보게 되었다.

<문제점>

엔론사 파산으로 드러난 기업 연금 운영의 문제점은 다음 5가지이다

(1) 엔론사 경영진 및 회계기관이 기업 부실을 숨기고 부정한 회계운영을 하여 투자자 및 근로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점

(2) 401(K) 구좌에 엔론사 자사주식이 60%나 편입되어 엔론사 파산시 근로자가 실직과 동시에 연금 원금도 상실하게 된 점

(3) 거래정지 기간중에 근로자는 주식 매매가 금지되었으나, 경영진은 주식 거래가 허용된 점

(4) 회사가 401(K) 구좌에 출연한 주식은 근로자가 50세가 될 때까지 매매가 금지된 점

(5) 근로자들이 기업 연금 운영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고, 본인의 연금구좌 운영에 대하여 1년에 1회 정도 자료를 제공 받는 점.

<개선 방안>

2002.2.1 부시대통령은 제2의 엔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 연금 제도 개혁안을 마련하였다. 이 개혁안은 노동부, 재무부, 상무부로 구성된 대책반에서 마련된 것으로서 주요사항은 다음 5가지이다.

(1) 근로자가 자기의 연금 펀드를 관리하고 자산운영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함 - 근로자의 401(K) 연금 펀드가 지나치게 자사주에 편중되지 않도록 분산 투자를 할 권한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되 자사주 편입한도는 정하지 아니함.

(2) 회사가 출연한 자사주의 거래도 3

년 보유이후에는 거래를 허용함.

(3) 거래정지 기간 중에는 경영진의 주식거래도 제한하며, 회사는 의무적으로 적어도 30일전에 거래정지기간 설정을 예고하여야함.

(4) 근로자에게 연금 운영관련 정보를 매 분기마다 제공토록 함

(5)사용자는 투자관련 정보를 근로자에게 수시 제공하고, 필요시 별도로 투자상담사의 조언을 받을 수 있게 함.

<미 의회 입법 동향>

미 하원은 공화당 보이니어 의원이 발의한 행정부 개혁안과 비슷한 안을 4.11에 통과 시켰고 이 안은 상원에 계류 중이나, 상원에서는 자사주의 편입비율을 제한하자는 민주당의 의견과 제한을 두지 말자는 공화당간의 의견이 마찰을 빚고 있어 통과되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거래 정지 기간 중 경영진의 주식거래 금지 및 30일의 사전예고 기간 설정 의무화 규정은 7.30 부시대통령이 서명한 회계개혁법에 포함되어 이미 시행중이다.

<시사점>

미국의 경우 기업 연금 제도는 근로자의 퇴직후(65세 이후) 주요 소득원으로서 연금 형태는 확정형과 각출형으로 나누어지는 데 1997년 노동부 자료에 의하면 미국의 기업연금은 72만건인데 이중 확정형이 6만건 각출형이 66만건(401(K)는 27만건)으로서 각출형이 압도적이다. 이중 401(K) 제도는 주식편입비

율이 높아 운영실적이 주가변동에 좌우되는 고수익 고위험 펀드이다.

미국의 경우 2000년 이전에는 경제가 호황이어서 연금 기금도 막대한 이익을 올려 근로자들도 부유해 졌으나, 2001년 엔론사 파산 사태에서 보듯이 원금까지 손해를 입는 상황이 발생하고, 2002년 경기 부진으로 주가가 하락하자 기업연금도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었고, 퇴직후에도 생계를 위하여 취업하려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다.⁴⁾

초과 근무시간 및 보상

실업률이 높은 불황기간 동안 노동자들은 임시해고(layoff)된 동료들 대신하여 종종 초과근무의 요구를 받아왔다. 그러나, 초과근무시간과 최저임금에 관한 법인 Fair Labor Standards Act (1938)는 주당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서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할 뿐 명시적으로 초과 근무시간의 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사용자측에 의해 강제적으로 요구되는 비자발적인 초과근무에 대해 많은 개별 노동자들은 단체협상을 통해 그 한도를 제한해 왔다 (Communications Workers of America vs. Verizon (2000),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Machinists vs. Boeing (2002). Amalgamated Transit Union vs. Pittsburgh Port Authority Transit (2002)).⁵⁾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노사간의 합의가 최근 새로운 이슈로 등장하는 가운데 중간관리자들로 하여금 초과근무시간 일정을 잡지 않도록 하기로 유명한 미국의 가장 큰 대형할인점 월마트(Wal-Mart)가 관리자들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 고용인의 근무시간표를 조작하거나 기록없이 초과근무를 강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지난 12월 19일 오레곤주에서 있었던 재판에서 배심원들은 월마트가 1994년부터 1998년 동안 18개 점포에서 400명 이상의 직원들에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40시간 이상을 근무시켰으며 월마트의 유죄를 판결하였다. 월마트는 이외에도 전국에 걸쳐 초과근무에 관한 문제로 40여개의 재판에 연루되어 있다.⁶⁾ 이외에도 제네랄 일렉트로닉(GE), 코카콜라, बैं크 오브 아메리카 등이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정당하게 보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판을 받았거나 현재 재판 중이다.⁷⁾

초과근무시간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4) 401(K)가입자의 1999년 말 자산은 1인당 149천달러에서 2002.7.1은 118천달러로 23%감소
- Employee benefit research institute (www.ebri.org)

5) Labor Research Association Report, Sep. 12, 2002.

6) New York Times, Dec. 20, 2002, The Wall Street Journal, Dec. 19, 2002

7) The Wall Street Journal, May 30, 2002.

못 받았다고 주장하는 고용인들에 의한 소송이 이어지는 가운데,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기존의 초과근무시간에 관한 법을 사용자측에 유리하게 개정하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화당 상원의원 저드 그렉(Judd Gregg)은 현재의 법정근무시간인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시간에 대해,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1.5배의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임금 대신 그에 해당하는 시간을 휴가(compensatory time off)로 보상 받는 안을 제시하였다. 사용자측은 현재의 초과근무에 관한 법안이 너무 엄격하다고 새로운 법안의 제시를 환영하는 반면 노조는 노동자가 근무시간을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새로운 법안의 도입이 실질임금을 감소시킬 것으로 우려 이 법안의 통과에 반발해 왔다. 그간 민주당의 저지로 통과되지 않았던 이 법안이 공화당이 우세를 점한 새로운 의회에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지 주목된다.⁸⁾

불법체류자의 노동권 관련 연방대법원 판결

미 연방대법원은 2002. 3.27 “불법체류자가 노동조합 조직을 이유로 사용자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도, 부당해고

기간중 임금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Hoffman 플라스틱 제조회사 vs. 미연방 노사관계위원회)을 내려 이민법이 노동법보다 우선시됨을 판시하였다.

<사건 개요>

1988.5월 근로자 호세 카스트로는 LA지역의 호프만 플라스틱 제조공장에 고용되어 동년 12월 동료직원 4명과 노동조합을 조직하려하자 회사는 이들을 해고하였다. 1992년1월 연방노사관계위원회는 호프만 회사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음을 인지하고 부당노동행위중지명령과 함께 부당해고기간중 임금 지급 명령을 내렸다. 1993.1 연방노사관계위원회 LA지역 순회행정판사는 이들 해고 근로자의 해고기간중 임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카스트로가 멕시코 출신의 불법체류 근로자이고, 회사에 고용될 당시 텍사스출신 친구의 출생증명서를 위조하여 취업하였다는 진술을 확보하였고, 카스트로는 불법체류자이므로 해고기간중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판정하였으나, 1998.9 연방노사관계위원회는 회사측에 대하여 카스트로가 부당해고된 날로부터 불법체류자로 확인된 기간 3년 반 동안의 임금 67,000달러를 지급 판정을 내렸다. 이에 회사측은 연방고등법원에 항소하였으나, 연방고등법원은 회사측 패소 판결을 내려, 다시 회사측이 연방대법원에 상고한 결과 연방대법원은 연방고등법원의 판결을 뒤엎고 “카스트로가 노동조합 조직을 이유로 부당해고를 당하였어도 불법체류자이므로

8) The Wall Street Journal, Nov. 8, 2002, Labor Research Association Report, Nov. 22, 2002

해고기간중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여 회사가 승소하였다.

<판결 요지>

이번 판결은 연방대법원 판사 9명중 5명의 찬성(4명은 반대)으로 결정되었는데, 다수의견은 “불법체류자는 미국에서 일할 권리가 없고, 노동자의 연방이민법 위반이 고용주의 노동법 위반보다도 더 죄질이 무거우며, 불법체류자들이 해고기간중 임금을 지급받게 되면 이민법을 사문화 시키고, 향후에 이민법 위반사례가 더 빈번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반대한 소수의견은 이민정책과 노동정책은 상호보완관계임을 강조하면서, 이민법이 불법체류를 단속하는 법이듯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제재도 근로자를 보호하는 유효한 수단이므로, 이런 제재장치가 작동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들은 불법체류자들을 저임금으로 고용하면서 수시로 해고하게되고 불법체류자들이 더 많이 사용자에게 착취당하게 될 것임을 주장하였다.

<판결의 영향>

이번 판결로 인하여 불법체류자의 노동권 보호가 상당히 위축될 가능성이 높으며, 사용자들은 불법체류자들이 체임 또는 부당해고를 당하여도 불법체류자 신분이기 때문에 추방당할 것을 두려워하여 권리 구제가 소극적일 것임을 악용하여 불법체류자를 더 착취할 가능성이 높다.(미국 내에는 약 8백만명 이상의 불법체류자가 거주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 노총등 노동계에서는 이번 연방대법원 판결에 강한 반발을 하면서, ILO에 결사의 자유 위반으로 제소하였고, 경영계도 노동권 보호를 촉구하고 나섰으며, 정부도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체불임금이나 부당해고등 노동권은 보호됨을 강조함. 또한 의회에서도 2003년에 청문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 2003년 전망

노동시장

2003년 미국경제는 2.5-3%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2002년보다는 나아 것으로 보이나, 이라크와의 전쟁등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어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고용상황도 상반기에는 실업율이 6%대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실업자의 생계 및 취업이 더욱 어려워 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부시대통령도 2003. 1.7 10년간에 6,470억불 규모의 경기부양대책을 발표하면서 취업촉진수당 1인당 3천불 지급과 실업급여 지급연장을 강조한바 있고, 1.8 미 의회는 실업급여지급을 현행 26주에서 5개월 연장하는 법을 통과시켜 실업자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도록 했다.

노사관계

노사관계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노사간에 자율적인 단체교섭을 통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하여 다소의 파업도 예상된다. 그 예로 GE 노조가 기업이 근로자에게 의료보험 부담분의 상당액을 전가시킨 것에 항의하여 1.14부터 2일간 파업에 들어갔다. GE사의 파업은 1969년 이후 처음으로, 5월에 시작되는 노사간 협상에서 노조가 의료보험비 증가 등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임을 시사한다. 6월 15일 만료하는 노조의 계약에 대한 협상이 이라크와의 전쟁기간 중 파업으로 이어질 경우, 전체 생산의 2~3%가 국방에 관련되어 있는 GE의 사용자측에서는 정부에 Taft-Hartley Act를 발동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GE의 협상 결과는 앞으로 있을 노사협상에서 증가하는 의료비 중 얼마만큼을 근로자측이 부담하게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⁹⁾

노동정책, 노동법 개정

장기적 실업률이 증가하고 실업수당의 수혜기간이 만료된 노동자가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실업보험과 고용 시스템의

보완이 요구된다.¹⁰⁾

2003년 미 의회의 노사관계 이슈는 이미 통과된 실업급여 지급 연장 법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¹¹⁾, 기업연금 개혁 법안 제정, 불법체류자의 노동권 보호 등이며, 동 현안사항은 지속적으로 논의 될 것으로 보이나, 공화 민주 양당간에 첨예한 대립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9) New York Times, Jan. 8, 2003, The Wall Street Journal, Jan. 8, 2003

10) 기존의 직업훈련 프로그램들 (Job Training Partnership Act (JTPA), Job Corps) 이 효과가 없었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의회가 비효율적인 직업훈련 교육에 예산을 낭비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The Heritage Foundation Back-grounder, No. 1597, The Heritage Foundation, Sep. 30, 2002

11) 미국의 최저임금은 시간당 5.15달러로서 1997.9월이후 인상되지 않았다.